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6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6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번안의 건(추가)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번안의 건(추가)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번안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6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6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6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6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6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6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6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6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6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6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6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6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6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6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6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7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7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7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7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7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7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7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7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7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7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7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7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7
5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7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7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7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7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7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7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7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7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7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7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7
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7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7
66.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7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7
6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7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8
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8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8
7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8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0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번안의 건 ..	50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번안의 건	50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번안의 건 ..	50

(09시35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 5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 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 66.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 6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6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심사자료 3권의 1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R&D사업의 예타 폐지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필요사항 2번하고 3번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D사업 예타 이외에 건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에 대해서 R&D 기준금액을 상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사항입니다.

2번은 기준금액을 변경할 대상 사업이 건설사업 그다음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사업 중 SOC사업만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SOC사업부터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예타 도입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기준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만 상향하고 다른 사업 유형에 대해서도 추후에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 상향 규모에 대해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9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됐는데요.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정 규율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SOC사업부터 도입 완화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SOC사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SOC 관련된 사업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

랐고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발전계획, 국토계획 그리고 사전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SOC사업이라는 게 대개 정형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SOC사업부터 기준금액을 완화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사무처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2배 정도 상승했고요, GDP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배 정도를 우리가 완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정도를 완화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사업비 500억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기준 300억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1000억으로 하고 2배로 하면 국비는 600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규율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1000억, 600억보다는 1000억, 500억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각각 예타 건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SOC 건설, 정보화사업 등등 각 사업 유형별로 건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가 제도 도입 이후에 최근 1000건을 했습니다, 1000건. 그래서 1000건 중에서 SOC사업, 그러니까 건설사업이 73%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1%가 SOC고 나머지 22%가 건축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15% 정도가 R&D사업이고요, 나머지 6% 정도가 정보화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R&D사업이 폐지되면 결국에는 정보화사업하고 기타 정도면 그동안 예타 진행했던 전체 건수 중의 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예타 사업의 73%가 건설사업, SOC사업이고 또 거기에 R&D가 한 15% 된다고 그랬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R&D 15% 더하면 88%.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예타 기준을 그냥 기존대로 둑어 두자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건수도 많지 않은데. 아까 차관이 보고한 것처럼 99년에 도입한 이후로 물가도 크게 올랐고 또 GDP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예타라고 하는 것이 비용 대비 수익 효과를 자꾸 따지는 것인데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방 사업들의 경우 예타가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수없이 좌절된 예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다면 이 문제를 다른 타당성들을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외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1000억, 500억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혹시 1000억으로 변경됐을 때 SOC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정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10% 정도 제외됩니다.

○**김영환 위원** 10% 정도가 그……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500억~1000억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10%?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R&D 건수 중의 10%입니까, 아니면 73% 중의 10%입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전체 SOC 중에서도.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R&D 쪽은 AI 문제라든지 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 주자고 해서 15%에 해당하는 R&D 부문은 이미 풀어 준 상황입니다. 맞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 보도를 보면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관님도 잘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채한 것,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R&D를 논의할 때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어 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당 위원님들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마는 풀어 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그냥 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은 각 지역에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고, 아까 이게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일률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키게 되면 진짜…… 저도 물론 지역의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평계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진짜 사업성이 없거나 각 지자체장들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냥 마구 잡아서 진행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일률적으로 다 같이 금액을 상향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SOC에 대한 예타 기준금액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상향된다는 점에서 금방 죄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약한 약간 선심성 공약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시행될 그런 점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경제 장치로서 금액은 1000억으로 상향을 하되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결로 예타 실시 요구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비지원 규모는 차관께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저는 300억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SOC에 한해서 예타 기준금액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하되 국비지원 규모는 300억으로 하고 다만 이런 것들도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결로 예타 실시 요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500억에서 1000억으로 SOC 분야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500억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 기존에 이렇게 99년에서 현재까지 26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형태를 현실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도 한 사오 년간에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단히 많은 이런 현상의 문제도 다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물론 저희들이 R&D 관련한 부분들은 빼내서 진행을 했지만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통과되고 진행을 하더라도 총사업비 부분 자체의 전체가 볼륨이 물가나 자재, 인건 등 오르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전체 지금 SOC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총사업비가 조정이 안 돼서 현장에서는 실제 1년이나 1년 6개월간 다 올 스톱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재정 당국의 고민도 이해가 가요. 만약에 총사업비 문제를 협약 이후 조정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SOC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의 문제가 있어서 재정의 압박이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압박이 없는 형태로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현장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유연하게 기재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그냥 이것은 별첨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OC 관련한 부분들은 워낙 지난 이십여 년간 올랐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올려 주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73%를 제외한 부분들은 R&D 빼고 나머지 있지만 그래도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재정의 여러 가지 압박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세입 관련한 기반들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조금 상황 자체가 호전이 된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논의해서 의결하더라도 저희 기재위에서 논의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예타 기준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 기재부 또 국회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그때 꼼꼼히 하면 될 거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 예외를 하자고, 일단은 SOC 먼저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을 때에 정보화사업의 규모·양태와 지금 AI 시대의 규모·양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정보화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사업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혹은 재정건전성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하라고 기재부가 있고 또 국회의 심의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심의 기능 자체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기준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기재부가 재정준칙으로 표현되는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어쨌든 SOC사업부터 도입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진성준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체 비율처럼 88%고 그 외의 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말고 전체를 다 1000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차관님, 우리가 AI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그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정부가 AI 정부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 정보화사업하고 AI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물론 관련이 있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 저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하는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것은 다른……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전반적인 위협이 있을 수가 있으니 다른 사전 검토 장치가 잘 마련돼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는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SOC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자체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화사업도 AI사업인 경우가 많고요.

AI사업, 시급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그대로 놓고 시급하다면 별도의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시급한 사업은 시급한 사업대로 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대로 지키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전체 다 말씀을 하셨고요. 죽 보니까 우선은 기준과 대상인데 기준에 대해서는, 1000 억·500억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대상인데 대상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건전성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도 있고 다 충돌되기는 한데 그 부분은,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 입장을 수용해 주는 건 어떨까요?

○박수영 위원 차관님, 예타 면제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준을 올리기 전에 예타 면제 제도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화사업에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발하게 적용하겠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기준을 올리겠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예타 면제 제도 있으면 그걸 활발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2차관이 재정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하고 풀어 줘서 많이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뒷감당이 되거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입장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차관님 바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마냥…… 저도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안 낼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재정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풀어놓으면 국민들로부터의, 언론으로부터의 질타 이런 것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박수영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재정 본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타 기준 완화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물론 맞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재정 규율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SOC만이라도 일단 예타 대상 기준을 높이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기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꼭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 조치를 활용하는 게 맞지 SOC 말고 나머지 사업까지 이렇게 다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것은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간 너무 일시에 많이 진전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사실은 예타 면제는 절차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 걱정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절차가 일정 정도 해소되면 재정준칙, 흔히 말하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는 기재부가 하는 것이고 또 국토부에 대한 건설사업 같은 건 국토부에 대한 실링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율적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것은 예타 면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언급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조금 먼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국가부채 수준이 113%고 우리나라하고는 한참 먼 얘기이고 지금 프랑스 재정 관리 상태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복지 지출이랄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프랑스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예타 면제 상향 조정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리고 재정관리와 함께 비교했을 때는 저는 큰 우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정보화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건설사만 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율 자체가 극히 적고 그래서 이게 큰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절차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오히려 조금 더 눈치를 보면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소위에서 합의하는 것에 저는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마지막,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내년도 예산이 720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그중에서 예타를 통과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조승래 위원 대략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그런데 총사업비라는 게 사실은 규모가 있어도 대개

통과된 사업은 초기 착수에서는 설계비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 대비 한 5~10년 단위로 스프레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여기서 파악은 안 됐는데 그렇게……

○조승래 위원 많지 않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발언 기회 주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통계에 대해서 건설사업이 72%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SOC는 5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포션이 SOC 반, R&D 15%, 기타 35%로 구성이 돼 있고요. SOC 50% 중에서 500억~1000억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가 빠지고요. 나머지 35% 구간은 500억~1000억 구간이 20%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빼면 7%입니다. 그러니까 SOC 구간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지만 규모 면으로 봤을 때 SOC 이번에 조정해서 빠지는 물량의 나머지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75%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남은 분야가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통계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타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총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어떻게 구조를 짜고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이지 예타 기준 상향하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제가 통계로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재정건전성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들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지 예타 기준 상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박수영 위원 예, 진성준 위원님 하신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요? 그러면 진짜 두 분만.

진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박수영 간사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종의 절충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비중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타의 한도를 달리 설정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 하되 다만 그렇게 되면 지방 사업의 경우 무분별하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하시니 아까 차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회의 의결로 기재부에 예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렇게 상임위 차원의 의결로 예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견제 장치는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타협하고 절충하자라는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진성준 위원님 새로운 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안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기재부 재정기획관이 말씀하신 통계를 이제 말씀으로 하셨는데 기재부도 이걸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게 재정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자료도 만들고 통계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고 한 번도 와서 설명도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 통계도 처음 듣는 통계입니다. 절반 정도 SOC가 차지한다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차관님이나 재정기획관이 와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한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지금 숫자를 입으로만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줘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했었고 오늘도 충분히 토론했는데요. 사실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이 또 제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결론을 못 내리니까 일단은 보류를 하고 정부 의견도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듣고 해 가지고 절충안을 저희 간사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영진 위원 꼭 절충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논의를 되게 길게 했었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길게 했는데……

○김영진 위원 그때도 똑같은 방향과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진성준 위원님 재정준칙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길래 믿었지.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고, 연계할 사안은 아니지. 심의하자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부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의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할게요.

○조승래 위원 예, 그러시지요.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됐어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입니다.

논의 필요사항 네 번째고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여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혜택 기준을 상향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정의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지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이 논의 필요사항 4는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예타 기타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번,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예타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를 구체화하는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타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 동 조문에 대해서 해당 연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검토의견은 해당 연도가 들어가면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산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방금 사무처에서 이렇게 검토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연도라는 네 글자만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지난번에 다 합의됐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4페이지입니다.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 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은 다 공감하셨고 구체적인 문구는 추후에 재논의하자고 하셨고 오른쪽 중간 표의 기재부 대안을 보시면 새로운 대안 부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이런 문구 들어가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법문에 이렇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과 경종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수도권 안에서의 지역균형발전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진성준 위원** 예, 이견이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이 무슨 뜻입니까, 차관님?

○**진성준 위원** 강남·북 격차가 있잖아요.

○**김영진 위원** 강남과 강서의 차이라는 거지요.

○**박민규 위원** 못사는 동네.

○**박수영 위원** 지방은 지금 훨씬 못사는데.

○**김영진 위원** 그렇지. 그게 우선이고.

○**소위원장 정태호** 이미 합의됐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지금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한 부칙인데요, R&D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부분이랑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일을 정하면 되는데 그중에 대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이요,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은 시행령을 작성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개월 정도 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지역균형하고 관련되는 그 문제는 즉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러면 정부안대로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66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타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는 정성호 의원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자는 적용례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특별한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71페이지,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8페이지 보시면 제정안하고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 사용을 통한 소비와 투자 증대가 세수로 이어질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5년 2월 10일 2차 소위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비해 상황 변화가 있음을 고려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준칙과 예타 면제를 포함한 공청회 실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 다음 걸 진행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우선 개별 조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80페이지 보시면 재정준칙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 그다음에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이나 향후 재정 소요 대비를 위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재정준칙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 가능성 여부나 복지지출 위축 우려를 감안해서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찬반 의견을 참고하여 가지고 입법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정부 입장을 물어보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위원님들 토론 바로 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제정법으로 할 거냐,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거냐 하는 의견도 나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보다 기존에 간사 간에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상임위 차원의 또는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

○**박수영 위원** 저도 진성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라 그동안에 아마……

전문위원님, 우리가 공청회 안 했지요, 재정준칙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대 이때는 안 했습니다.

○ 박수영 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22대로 바뀌고 나서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방향으로.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소위에서 하든지……

○ 소위원장 정태호 지난번에 공청회 안 했나? 나는 했던 것 같은데?

○ 박수영 위원 재정준칙 공청회 했습니까, 우리가?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했지요, 안 했지요.

○ 소위원장 정태호 21대 때 했나? 21대 때나 했던 것 같은데.

○ 박수영 위원 21대 때도 안 하고 각 당에서, 우리 당에서 했던 것 같아요.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공청회 하는 걸로 하고……

○ 진성준 위원 공청회 하자는 것도 큰 진전입니다. 그간에 원천 봉쇄 아니었습니까?

○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공청회 하자고 그래서 약간 제가……

○ 박수영 위원 이제 여당 되셨잖아요.

(웃음소리)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공청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133페이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이행방안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쳐 세부목표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전년도 계획의 이행실적 평가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수치로 제시된 것이 아닌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재정목표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의견이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이렇게 보면, 그냥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면 A·B·C 목표가 있으면 각 목표대로 이행방안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부목표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수지 규모와 채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을 어찌할 건지, 세입을 어찌할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을 어찌할 건지, 세입을 어찌할 건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같이 한몸입니다. 이게 한몸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항목하고 관련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이행실적 이 내용은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요.

○**박수영 위원** 담당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진짜로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까?

박홍근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재부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분리해서 만들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박수영 위원** 분리해서 만들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하나는 수지 목표가 있고 채무 목표가 있으면 수지하고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출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지 이게 수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뭘 해야 되고 국가채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뭘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 위원님, 재정건전성심의관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현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라든가 세입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재정 혁신 또는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법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부목표별 이행방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련되다 보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실 말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141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로 돼 있고 이행방안이 1번 지출 재구조화, 2번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의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3번 R&D 투자시스템 개혁, 부담금 정비 등의 재정제도 혁신방안 등 해 가지고 좀 러프하게 기준의 이행방안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방안을 조금 정치하게 하면 세부목표 이행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그렇게 크게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정확히 뭔지 법률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용어로서.

그 안의 내용 중에 이미…… 그러니까 계획과 목표가 뭐가 다르지요, 용어로서? 지금 안에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전망은 전망대로 있지만. 그다음에 관리계획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그쪽도 관리계획. 계획이 있으면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하지요, 목표와 계획을?

차관님, 혹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서 목표라는 것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이것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 목표까지 포함해서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조세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전체 세입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출 재구조화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국유재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 안에 목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게 저한테는 좀 애매모호해서, 그 안의 내용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차이가 크게 있나요? 아까 목표 좀 러프하게 이행방안? 이행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140페이지 보시면 국가운용계획, 그러니까 7조 2항에 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에는 첫 번째가 기본방향과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본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방향 그다음에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근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 이루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목표가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관리재정수지는 25년 -2.9, 그다음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세부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결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대로 첫 번째 목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에 있어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개선이라는 목표에 세부항목별 분리가 무의미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첨부서류에서 관리계획이라 했던 거를 플러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 이행실적이라는 지표를, KPI를 줌으로써 박홍근 의원님의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지금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대목은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이 말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목표라는 게 결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애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세부목표별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들어 있고 첨부서류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 적당한 데에 재정운용계획과 그 관리계획의 이행방안 이런 정도를 넣어서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상당한 수준의 관리계획들을, 이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세부목표별이라는 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진성준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현재도 이행방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하니 명칭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행방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세부목표별로 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행방안이나 아니면 관리방안이나 관리방향이나 이런 식의 문안을 국가재정법 제7조에 어디 적당한 호로 만들어 넣는 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141페이지 말씀해 주신 이행방안에 보면 지출재구조화 등등 해 가지고 1, 2, 3, 쪽 열거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꼭 수치가 아니라도 이런 걸……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을, 현재 안은 ‘목표(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부목표별’이라는 말만 지우고 ‘이행방안 포함’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구를 그냥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이렇게 괄호도 안 해도, 목표랑 이행방안 같이 이렇게 병기하는 쪽으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위원님들 여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이행방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수정하고 뒤에 집행실적, 이행실적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수영 위원** 차관님, 3항은 괜찮은 거예요? 3항은 괜찮아요, 그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침부서류는 괜찮다고……

○**박수영 위원** 괜찮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4페이지입니다.

장기재정전망에 지출관리계획 포함 및 수시 전망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 40회계연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두 번째, 현행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과 별도로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출관리계획 포함과 관련해서 동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 관리계획을 도출·운용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수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개정안에 규정한 수시 전망이 재량규정임을 고려할 때 기재부 주장처럼 사회보험 주관 부처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항목은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장기재정전망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수시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장기재정계획이 아니고요, 장기재정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계획적인 성격이 있어서 여기에 수입을 어떻게 하 고 지출을 어떻게 하고 이런 방안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40회계연도 이상 장기재정전망은 이게 프리딕션(prediction)하고 프로젝션(projection)인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재정위험을 저희가 경고를 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는 성격이지 정부가 지출을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을 막 늘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적인 성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이유로 장기재정전망에 지출계획이나 수입계획 식으로 정부 의지를 표현하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망이라는 속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급격한 여건 변동이 생기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사회보험 재정 추계하시는 부처들을 설득을 해서 이 조항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

영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정부 측 설명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정부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대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첫 번째는 개정안대로 안 하고 두 번째만 개정안대로 하는 걸로……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일단 25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적용례는 적용례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는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대로 갑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예비비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분기별 또는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전용, 이용·이체, 기금운용 변경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2009년도에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다만 제출자가 정부로 규정되어 있는 안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돼 있는 안이 있는데 예비비를 실제 사용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고요.

제출요건 및 기한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 이용·이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례와 같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과정의 본질이라는 게 국민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생각하고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회와 국민께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관련된 내용도 지금까지 입장과 달리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 여기서 용어는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6페이지 왼쪽 맨 위 네모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명세서라는 거는 예비비를 다 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라는 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이런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이 금액만큼 씁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쓴 거는 연말에 가야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현행 법령의 체계대로 이미 쓴 결과인 사용명세서는 결산할 때 제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제출하는 거는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 이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163페이지 봐 주십시오. 163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 박정 의원님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의 사용 내역’이 돼 있는데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원래의 취지대로 그리고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 건지 국회에 이상 없이 보고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떠신가요?

○박대출 위원 지금 이 안건 법안 중에서 용어가 사용내역이라는 표현도 있고 사용명세서라는 표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 법 기준 해 가지고 각 조항이, 이를테면 52조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52조 말고 다른 조항에도 혹시 표현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할 필요 있는 거는 사용계획명세서라 하고 사용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할 때는 사용명세서라고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용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야지요, 법안을.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 조항은 이 조항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은……

○박대출 위원 이게 하나밖에 없나요, 법안에?

○진성준 위원 현행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이 다 법안에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계획을 넣을 필요 한 부분, 계획이 필요 없이 사용된 전체 내용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65페이지 2번의 내용입니다. 2번의 내용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제출하는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은 사용계획명세서가 아니라 사용명세서인데 사실 용어가, 사용명세서가 회계연도 끝난 이후에

나가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1번의 취지는 집행내역을 제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의 사용계획명세서는 차관님이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2번은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주기랑 그걸 정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1번은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할 것 이냐 말 것인지를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그러면 두 분, 전문위원하고 차관 말이 틀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아니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 제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차관님은 아까 사용명세서는 결산할 때나 제출이 가능하고 사용계획명세서는 분기 말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 말씀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안에 사용명세서라는 표현이 몇 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사용계획명세서와 사용집행명세서라고 용어를 구분해 가지고 필요 한 부분에다가 넣는 방안은 어떤가요? 그러면 혼선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집행한 것과…… 쓴 것과 쓸 것을 구분해서 용어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비라는 게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사용계획이 결정되면 그 분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분기에 집행이 되기도 하고 세 분기에 집행이 되기도 하고 1년에 다 집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국회에……

○**박대출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법안을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문구를 다 안 봤는데 법안에 사용명세서라는 표현이 안에 몇 번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명세서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계획명세서라는 용어를 쓰고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명세서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구분 지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은 포괄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혹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출된 법안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얘기하면 사용명세서라는 말이 맞지만 정부의 설명은 이것은 연말에 가서나 사용의 구체적인 명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차기 국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는 만큼 그때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그 예비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니 그 사용계획명세서를 제출하면 예비비가 때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이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사용계획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 박대출 위원** 그 뜻을 몰라서 내가 묻는 게 아니라……
-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문제……
- 박대출 위원** 지금 차관의 답변이 계획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박대출 위원** 계획이라고 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내역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법안……
- 진성준 위원** 아니, 그걸로 대체해 달라는 겁니다.
- 박대출 위원** 필요가 없어요? 아예 대체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는 없고?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취지……
- 박대출 위원** 집행내역서가 필요 없습니까? 법안 문구를 내가 다 못 봐서 그러는데……
- 진성준 위원**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그건 차기 국회에 내는 것이니까……
- 박대출 위원** 전문위원, 그래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집행내역서는 집행이 다 끝난 이후에 차년도 국회에 내겠다는 의미고요. 당해 연도는……
- 박대출 위원** 아니, 국가재정법에 예비비의 사용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 박대출 위원** 집행된 사용명세서, 집행명세서가 필요한 조항이 있을 것 아니냐고.
- 진성준 위원** 없다고……
- 박대출 위원** 법안에서 그런 구분이 아예 없어요?
- 진성준 위원** 그건 차기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사용명세서라고 결산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대출 위원** 지금 내가 법안의 문구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
-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차관님.
- 박대출 위원** 이것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어떤 법안에도 포함이 돼 있어야지.
- 소위원장 정태호** 임기근 차관님.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소위원장 정태호** 예비비 집행계획을 한 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소위원장 정태호**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계획서를 분기별로 제출한다고 할 때 이미 계획이, 그 전에 죽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예를 들어서 첫 분기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그 분기에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중에는 집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집행된 것은 집행됐다라고 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비비라는 게 원래 통으로 받아 놓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산 과정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승인하도록 돼 있게 예비비는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건데 다른 일반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 1분기에 얼마 해서 2분기에 얼마 해서 3분기에 얼마 해서 이걸 따지지를 않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실적까지를 더 보는 것은 법체계하고 지금 안 맞는 거고요. 저희 입장은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대출 위원 차기 국회에 보고하는 사후승인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는……

○박대출 위원 거기에 표현을 그런 표현을 넣어야지.

○진성준 위원 그건 이미 돼 있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거기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 그것은 집행을 넣자는 얘기지.

○진성준 위원 그건 현행법에는 돼 있어요.

○박대출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라는 표현을 넣자는 게 제 제안이라는 얘기지요. 사후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획 내용하고 집행한 내역을 구분해서 표현하자. 왜 하나는 계획은 넣고…… 명세서는 해 가지고 하나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왜 가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계획명세서 그리고 집행명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현행법에는 계획명세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명세서로 하면서 이런 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법체계가. 그래서 지금 사용명세서로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명세서를 의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이라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니 기준에 있는 것은 사용명세서라는 말 자체가 집행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왜?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계획명세서로 개념 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사용명세서라는 계획은 집행이라는 뜻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

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안 되면. 계획된 명세서를 집행내역서로 지금까지 그렇게 간주해 왔다든지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박대출 위원**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용계획명세서로 51조에 돼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서 예비비를 배정받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제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음에 집행명세서는 집행이 다 끝난 이후에 차년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집행명세서하고 사용계획명세서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계획명세서만.....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미 집행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부분은 이미 지금 법에 다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했던 것은 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 집행계획을 국회가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걸 이제 분기별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면 법에 집행내역을 보고할 부분과 집행계획을 보고할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집행내역을 보고할 부분은 그대로, 계획을 보고할 부분은 분기별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 법체계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박대출 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2번도 정리가 된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번의 주기에 대해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한병도·문진석 의원안은 사용계획명세서를 대통령 승인 얻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안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그러면 이 개정안과 달리 저희 대안은 분기별로, 그 분기가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169페이지 예비비 사용요건 명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 신청 시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명세서 내용에 예비비 사용요건에 대한 소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박스에 보면 정성호 의원안하고 정일영 의원안 이렇게 비교가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요건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요건을 지침에 있는 부분을 법에 명시할 경우 예비비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예비비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집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및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비비 사용요건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을 하는 게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가 동의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171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성호 의원안과 정일영 의원안이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진 위원 차관님, 대체로 요지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한다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불합치함’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바뀐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의견이 바뀐 겁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2024년에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의 총액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대략 전체 예산의 얼마 해서 추세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사실 맞는 건데 24년에 예비비가 급격하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해서…… 그렇게 계속 딱딱하게 이 법안을 규정해 놓으면 저는 기재부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불합치하다라고 의견을 주고 또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가 동의했잖아요.

○박수영 위원 그러면 정성호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진성준 위원 아니, 재정집행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줘야지. 더구나 예비비가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김영진 위원 저는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사용에 유연성을 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기재부의 잡무만 느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박민규 위원 잡무만,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잡무만 늘지요, 이것 뭐. 안 해도 되는 일을 다 써 가지고 올리고.

○박대출 위원 갑시다. 누가 여당 될지 모르고 기재부가 누구 따라가야 될지 모르니까……

○박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김영진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수영 위원 야당 때 발의하신 법이잖아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동의하시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정부가 정성호 의원안에 동의를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갑니다.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73페이지 동안에 대해서, 시행일에 대해서 공포한 날 6개월 후, 내년 1월 1일 이렇게 안이 있는데요.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적용례 부분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안 하기로 했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부터 대안으로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할지 아니면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안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이미 9월 말이 다 됐고 했으니까요 다음 회계연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회계연도라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026회계연도부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26회계연도를 얘기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올해 다 갔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6년, 내년도 적용.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결손 시 추경편성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도걸·차규근 의원안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국세감면율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국세감면율 한도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엄격하게 사전·사후 관리되는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의 경우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조세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한도 준수를 의무화할 경우 조세지출 확대를 통한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정하는 국세감면 한도 수치에 국회의 조세특례에 관한 법률 안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세감면율 한도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해에 집행이 끝나 봐야 그러니까 세입결산이 확인이 돼야 이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의무화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대로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요.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제 법안이라…… 아시다시피 현행 조세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한도 초과해서 운용이 매우 방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나 한도를 초과했고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늘 합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도 초과 시에 그 내역과 그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 만큼은 논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3페이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 초과 시 관련 내역 국회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서 차규근 의원안은 국세감면 한도 초과 시 그 내역과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그 전에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한도 초과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결산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9월 초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차규근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화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할 수 없다면 그 내역과 사유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사유를 파악해서 내는 게 국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지금은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렇게 185페이지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유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3일 날 조세지출예산서를 낼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를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그 내역과 사유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진성준 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에 동의하시나요?

○**박민규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법안……

○**차규근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통 큰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무화는 하지 않되 9월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라는 표현이면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6페이지입니다. 세수 재추계 의무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도걸·박정 의원안은 기재부장관이 당해 연도 세입예산과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당해 연도 세입예산 그다음에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대한 재추계입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연 3회, 박정 의원안은 연 2회 세입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안이고, 논의사항 1번은 먼저 당해 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족 시 계획된 예산집행이 불가하고 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세계 주요 국들도 당해 연도에 대해서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걸 의원안의 경우 6월·8월 의무화보다는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정하며 박정 의원안의 경우 추계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수 추계 시점을 보시면 8월 30일, 9월 18일, 9월 26일입니다.

그다음, 논의사항 두 번째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의 재추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세입 추계 시점 이후 여러 사정 변경으로 추계의 변동 가능성에 있으므로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 적정성을 위해 세입예산안 재추계를 검토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여기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언제, 몇 번에 걸쳐서 재추계를 할 거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9월 3일 날 저희가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안을 냈는데 이것을 국회에 변경해서 내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첫 번째 쟁점하고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점하고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재추계가 이루어진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서 9월에 한 차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 재추계 의무하고 관련해서는 9월 3일 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논의를 하는 게 10월인데 9월 달에 정부가 ‘세입예산안 이게 맞습니다’라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해서 다시 내라’ 이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경기에 너무 큰 변동이 생기면 예결위나 기재위에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논의가 자연히 뒤파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9월 3일 날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10월 말쯤 돼 가지고 매년 다시 내라,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은 동의하셨고요.

○박수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당해 연도 세입예산이 변경될 경우에 그다음 해의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5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10조 정도 세입경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도 세입 부분이 24년도 세입결손분을 반영해서 사실은 25년도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입경정을 한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도걸 의원님 취지를 이해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그때 국회하고 경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기재부 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클 때는 기재부 안이 분명히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한 번은 나와 줘야 그다음 해 세입경정 추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11월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언젠가 한 번은 변동이 필요할 때는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9월 18일 날 세수 재추계했거든요. 중간예납 끝나고 하면 어느 정도 큰 변동치는 없으니까 저는 시점을 정한다면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세수 재추계가 그다음 해에 또 영향을 미치는 세입 기반이 된다면 12월 초,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시점 그즈음에 기재부 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기재부 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세수추계는 실무적인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세수추계는 경제지표의 변동에 따라서 경제지표를 모형에 넣고 거기서 세수추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변동이 있으면 그걸 넣어서……

○**박대출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래서 중간중간 범인세 신고……

○**박대출 위원** 누가, 어떤 과정으로……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세청에서 신고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세수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진도비로 따지거나 아니면 세수추계모형에 넣어서 세수를 추계하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 시간은 국세청에서 자료 빨리 넘어오면 한 보름 정도…… 세수추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가만있는데 국세청이 갖다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세청에 보내라, 누가 보내라,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것은 일주일 내로 됩니다.

○**박대출 위원** 일주일 내로 된다고?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왜냐하면 주요 신고가 끝난 순간 신고 실적을 보내 주라……

○**박대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일주일이에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러니까 신고……

○**박대출 위원** 오고 가고 다 분석하는 시간이?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대로 9~10월 한 달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경제모형이나 경제지표 변화가 두 달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큰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에 세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한번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세입예산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도 세입 재추계하는 게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금년도 것은 더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경제지표는 상승하는 것으로 돼서 그게 상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변동의 폭이라는 게 세입예산을 고쳐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아예 안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결위나 기재위 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을 당연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에도 기재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소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절차에서 소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9월 달에 정부가 냈는데 이것을 다 완전히 새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내는 형식보다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예결위하고 기재위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100%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취지는 여하튼 당해 연도 세수추계는 9월 달에 하는 게 법인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점이 적절하다라는 거고,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다음 연도 것을 재추계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제출된 시점에서 또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별 의미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하여튼 새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진성준 위원 예, 공감합니다. 그것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 것인니까 그런 정도로 처리하도록, 다음 회계연도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6페이지의 제출 시기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 9월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9월에 한 것에 대해서 제출 기한을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제출 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9월 달에 한다라는 것은 9월 달에 제출한다라는 거지요. 9월 말까지는 제출한다라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제출 이후 그냥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9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추계가 끝나는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자체 없이 제출하도록……

○소위원장 정태호 ‘자체 없이 보고한다’ 이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0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의 확대입니다.

차규근·안도걸·윤종오·윤준병·박정 의원안은 추경편성 요건에 있어서 세입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안도걸 의원안하고 윤준병 의원안은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안이고요. 차규근·윤종오·박정 의원안은 이럴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아래 가지고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요건만 하나 추가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대규모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추경편성 없이 대응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변경을 수반하는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국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독자적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용액, 여유재원 등을 통해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세수결손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최근에 저희가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오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추경 사유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추경 사유를 열어 놓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결손하고 관련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 놓되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고 재량조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 지금 현재도 자료 191페이지 왼쪽의 위쪽을 보시면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 있느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 놓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호를 이렇게 추가해서 세수결손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도 추경편성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문구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문구면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하고 관련된 요건, 이 법체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요.

차규근 위원님.

○ 차규근 위원 차관님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세수결손 시에 추경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한 취지가 불용 예산의 확대 및 무리한 기금 돌려막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요건에 포함시키자는 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저도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이 법안 내용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안 중에 ‘대규모 불용’은 또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경편성 요건에 넣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요.

○ 박대출 위원 제가 이 법안 문구 구조를 보면 정부 측 설명이 이중 재량처럼 보여져요. 지금 이 자체가, 추가해도 그냥 이 자체가 재량이에요. 의무화가 아니라고. 다른 조항 안에 추가한다 그래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뭘 넣고 이중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 부분 문구를.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 김영진 위원 저도 사실은 박대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자꾸만 조항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1·2·3호이 사실은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안이고 세수결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해 나가는 게 기재부의 역할인데 그 조항을 넣는 것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을 하고 1·2·3호로 규정돼 있고 그것을 잘 준수하고 세수결손이나 이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세수결손이 되면 추경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국회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회가 심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낭비인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그냥 이 재량 범위에 넣고 그것이 이전처럼 59조·57조 이렇게 해서, 너무 과도한 범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것은 경기침체·대량실업,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그것 발생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항이나 3항에 따라서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항을 넣는 게 약간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서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행 유지하고 2항을 준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세수결손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수 있

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간의 추경의 성격을 늘 지출 확대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추경을 규정해 놓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세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변동에 따라서 세감이 예측되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세수결손을 메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정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미 정부의 세수추계를 넘어서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미 어떻게 어떻게 남는 세수들은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기는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쩌면 꼭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때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또 합니다마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수결손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게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그 세수결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부가 아까 제시한 의견대로의 법문안 정도로 정리해서 처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은,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2호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범주 안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나타난 사안이라 4호에 ‘세수결손인 경우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동일반복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2호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인지하고 판단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단일 항목을 또 추경의 요건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박대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저도 김영진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세수결손이 나면 우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세수가 안 걷어지니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항의 2호 ‘경기침체’ 부분을 해석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찌고저찌고하면서 또 집어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에 일정한 재량은 주고 규모가 크면 경기침체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김영진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전 정부가 경기침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세수추계의 오류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김영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금방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이 2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 되게 소극적으로 협조를, 협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호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중대한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것도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규정을 둘으로써 정부 스스로 불용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억제를 하고 무리한 기금 돌려막기 그런 것도 자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김영진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차규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문구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이게 뭐 또 이런 것을 위임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호를 넣어야 된다면 그냥 ‘중대한 세입 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 정도 문구를 4호에 넣거나 안 넣거나 이게 대안일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예비비 관련한 추경……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의원님과 또 다른 분들의 법안 발의 취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4호에 그런 문구를, 그 역시 재량이기는 하지만 문구를 넣는 것에 동의를 하시니까 꼭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진 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자꾸만 이런 조항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출을,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김영진 위원** 앞으로 안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꼭 없다라는 보장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동의를 해 주시지요.

○**김영진 위원** 간사님하고 협의하십시오.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박수영 위원** 아니, 4호를 꼭 넣을 필요가 없이 2호를 ‘경제협력과 같은’으로 돼 있는 데 이것을 ‘등으로’ 하고 세수결손도 그것으로 해석한다는 쪽으로 해도 될 것 같고,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보내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기재부한테 재량을 줬는데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호를 아예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이렇게 하고 등에 해당하는 게 세수의 심각한 결손, 즉 지출

구조조정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등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대량의 세수결손’ 이런 문장을 하나 2호에 넣는 것은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중대한 세수결손 등’……

○진성준 위원 아니, 세수 부족은 결산으로 판결되는 거지 중간에 세수결손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등’ 정도로 넣어서 해석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진성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입법의 취지를 다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 등이라는 말에 세수결손 예상 상황도 포함되는 거다라고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안이 어떻게 되는……

○진성준 위원 법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4호로?

○진성준 위원 예. 실제로 1호나 2호, 3호 이 모든 취지가 재정지출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거예요. 경기가 침체했으니 재정을 더 쓰자, 또 사회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으니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더 쓰자, 이런 재정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입 부족으로 추경을 실시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세 번 된 것 아닙니까? 대체로는 추경이 다 확대재정이나 재정 추가 지출을 위해서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입이 부족할 때에도 추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큼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합의가 안 될 일입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2페이지입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추경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편성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추경의 주된 재원이 국채 발행이고 국가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추경편성 요건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양자를 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안도걸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이것은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정책에서 추구해야 될 기본 가치이자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자료 추경편성의 요건에서 본 것처럼 추경은 대개 제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예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반영해야 될 내용으로 맞는 거지 추경편성의 요건으로는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정부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입장대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세출예산의 목 단위 사업 중 1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요건으로 추가하고 해당 요건 발생 시 추경편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10% 이상의 불용 발생 여부는 연말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낙찰차액 발생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인해 불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세출 불용을 전제로 해서 추경편성 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세출 불용이라는 게 연말에 가서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용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액 목적으로 추경을 한다? 이것도 추경 요건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추경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무슨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이런 목적으로 지출을 증대시킬 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를 단독으로 해서 추경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나요?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202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4월 15일까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동 지침을 3월 말까지 예결위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보고기한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 법률 개정안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3월 31일, 3월 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여기 뭐 4월 15일까지로 해 주셨으니까요. 4월 15일 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3월 31일까지로 하는 게 검토 필요 인데 윤준병 의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 법안에 보시면 4월 15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4월 15일로 돼 있는데 취지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원래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제출함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해서 그냥 원래……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월 31까지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4월 15일까지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4월 15일로 하겠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여기 지금 기재부 의견이 잘못됐네, 이것.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참고 박스에 보시면 보고일이 3월 31일까지로 최근 5년 간 되어 있어 가지고요. 3월 31일로 해도 무리는 없을 걸로 보았는데 그 부분은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윤준병 의원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월 15일로 하는 취지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날짜가 안 박혀 있으니까 이 날짜를 넣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월 말로 하면 되지요, 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월 말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각 부처로 지금 3월 말에 딱 맞춰 가지고 저희가 내려보내고 있는데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와 동시에 또 제출 못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4월 15일……

○소위원장 정태호 3월 말로 하셔요, 3월 말로.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의 말의 취지는 가능한 빨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잖아요, 원래. 그런 취지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3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 취지로, 그래도 기재부 입장은 봐줘서 4월로 한 건데 현재 3월 말까지로 하고 있다면 그 날짜를 명시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러면 3월 말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3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204페이지입니다.

정부 증액동의권 단위를 항 단위로 규정하는 박정 의원안입니다.

204페이지 왼쪽 하단의 참고 조문에 대한민국헌법 57조를 보시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보시면, 헌법에 각항과 새 비목이 어떤 단위를 이야기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동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일정 사업단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을 연계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모든 증액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 증액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증액동의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총지출 규모 증액 의결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06페이지 참고자료에 제헌국회 회의록 당시 유진오 전문위원의 답변을 보시면 예산의 총액을 증가시켜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예산 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204페이지를 보시면 박정 의원안은 증액동의의 최소 단위를 항(프로그램)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항(프로그램) 내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 심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상 증액동의권은 국회의 예산 증액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고 현재 프로그램 당 평균 예산이 1조 원 수준으로 국회가 정부안 감액 후 다수의 대규모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동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구체적 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상 정부의 증액동의권 규정 취지가 국회의 예산증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 전체 지출 규모를 늘려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의 증액이 구체적 계획 수립이 미비하거나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수시배정이나 배정유보 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 계획 및 사전 절차를 예산편성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프로그램별 예산 규모는 참고자료와 같이 정부가 추산한 것처럼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헌법의 각항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규정에 있어서는 입법과목의 최소 단위인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는 또 어느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박정 의원안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부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신규사업 단위는 예산코드가 부여되는 실질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지난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저희는 이것은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프로그램 단위로, 지금 한 1조도 넘고 있는데 그걸 항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죽이고 항 안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을 생각하면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하는 조항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저는 정부의 의견이나 박수영 간사님 견해에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막바로 그냥 헌법 개정 사항으로 볼 문제인가, 헌법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과 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조금 더 충실한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언지하에 헌법 개정하고 봅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껏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국회 예산심의권도 존중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증액동의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진성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굳이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까 사무처가 검토의견을 얘기하실 때 기재부 의견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국회 차원의 입장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중언부언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도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2페이지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배정유보·불용하는 경우 지자체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세수결손 시 특정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배정유보·집행유보를 금지하는 경우 다른 세출예산에 그 부담이 전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는 국세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세입 규모와 연동되어 있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감액 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 예산의 불용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만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것을 굳이 그해 연도부터 당장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행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2년으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단축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딱 당해 연도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해에 세입이 좋고 그다음 다음 해에 세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오히려 또 그해부터 정산을 해 나가는 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지방교육재정 상황,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3개년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은 그냥 첫해는 무조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 차원이나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오히려 탄력성을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라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23년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가 했던 것은 그냥 카톡 췄어요. 공문으로 내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의 과정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교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시도지사 그다음에 교육감 이런 제대로 된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협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1월, 12월 날 급하니까 이것을 카톡으로 쳐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그냥 통지하고 나중에 공문 처리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도나 지방교육청들은 연초에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전해, 예산 통과시킬 때 12월 정도에 거기도 통과되는데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다 짍니다. 쭉 집행을 해요, 한 해 동안. 그런데 갑자기 11월, 12월 돼 가지고 예산조정을 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이 23년, 24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협의 과정도 없이.

그러면 최소한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재정 여건이나 그리고 지방채 발행 인수하는 것도 25년도 예산 100억 넣은 거 아세요? 채권 발행해서 그 지출 수요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 기재부가 지방채 수요를 잡아 주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라고 24년도에 얘기했는데 25년도 반영된 게 100억이에요. 100억 가지고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지방채들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들에 법으로서 교정을 시키려는 의도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가 합리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지요, 어떻게 조정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협의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의견을 어떻게 들을지 그 과정들, 그다음에 보완 방안은 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제시를 해 줘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이해가 돼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23년과 24년에 저희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출발점으로, 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회와 일부 소통을 했고요, 두 번 정도 저희가 기재위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니 추경안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지자체나 교육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 방금 또 여기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 주셨습니다마는 중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조항도 지금 논의를 해 주고 계시니 국회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기재부에 자비를 빌어야 돼요, 계속?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박정 의원님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기재부의 일방적이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아주 거칠게 받아들였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와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교부금 배정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제한장치를 두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김영환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한다?

○차규근 위원 그 절충안으로 이제……

○소위원장 정태호 절충안이……

○김영환 위원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규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가 대안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대안을 가져오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랑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부칙, 마지막.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5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은 하위법령 소요가 있는 경우 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용례는 차규근 의원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심사 결과도 제출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규근 위원 오늘 안건은 아니고 행정 업무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하고 오늘도 소위가 이어졌는데 그때도 회의자료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배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보던 그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게 또다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게 종이가 상당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차규근 위원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 종이 없는 국감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의원 앞에 있는 자료는 표시를 해서 다음에 올 때 그대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는 그래서 아예 아이패드로 입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시만, 아까……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다 끝났으니까.

아까 세수결손한 부분을 추경의 항목 사항으로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좀 생각을 해 보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수결손의 범위를 1조원, 10조원, 50조원, 어느 기준에 맞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위원 있음)

대규모의 기준도 없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할 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김영진 위원님이 조금 전 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셔서 감사한데……

○**김영진 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세수결손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어차피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경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로. 그게 대체적인 공감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나 정부의 판단으로 하면 될 문제지 그걸 또 막 시행령에다가 기준을 정해라, 무엇을 어떻게 정해 보자,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진짜 많네요, 그다음에 쟁점도 많고. 그래서 오늘 가능한 다 해 보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가능한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오전에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오전으로 잡아 가지고 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번안의 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번안의 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번안의 건**

(11시52분)

○**소위원장 정태호** 지난 9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최수진·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어 오늘 처리될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73항부터 75항까지로 추가 상정하여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해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3항부터 75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24항, 25항, 27항, 28항, 30항, 31항, 36항부터 41항까지, 제73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17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9월 9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최은석

○첨가 위원(1인)

유상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 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